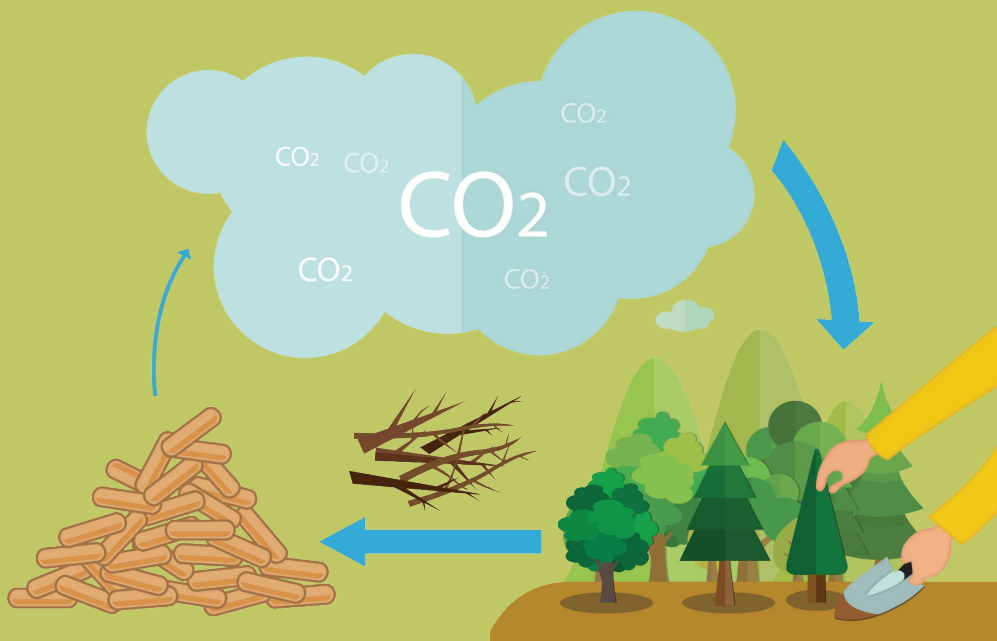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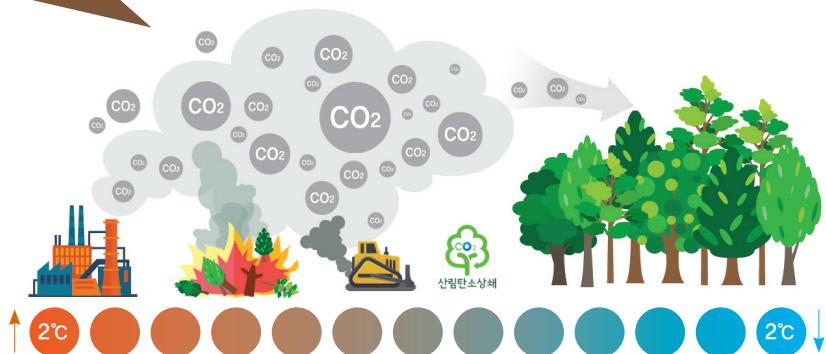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소해제도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이용 사업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제도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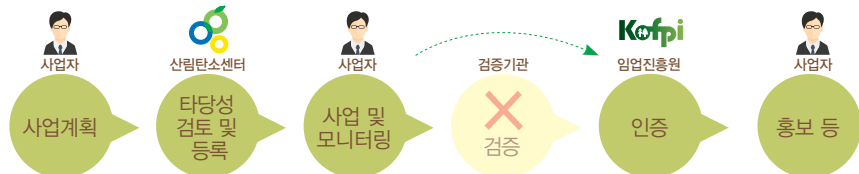


산림탄소상쇄제도는 기업, 산주, 지방자치단체 등이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탄소흡수원 증진 활동을 하고, 이를 통해 확보한 산림탄소흡수량을 정부가 인증 해주는 제도입니다.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의 시행(2013.2.23.)과 함께 도입되었으며, 산림탄소흡수량의 거래가능여부에 따라 “거래형”과 “비거래형”으로 참여 할 수 있습니다.

거래형 사업 절차



비거래형 사업 절차



산림탄소상쇄 사업 유형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이용 사업이란?

기존에 사용하던 화석연료의 일부 혹은 전부를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목재펠릿, 목재칩 등)로 대체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사업

거래형

국내산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를 사용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절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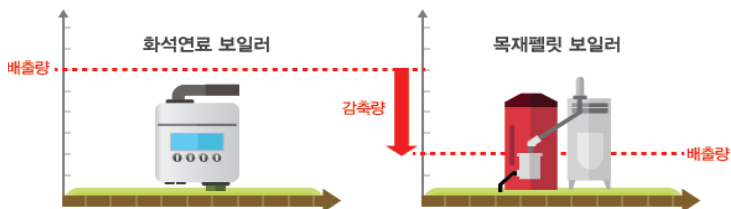
$$\begin{aligned} \text{거래가격} &= \text{매년 인증된 산림탄소흡수량(tCO}_2\text{)} \times \text{거래단가(원/tCO}_2\text{)} \\ &= (\text{기존 화석연료 이용(베이스라인)배출량} - \text{사업활동에 따른 배출량} - \text{누출량}) \times \text{거래단가} \end{aligned}$$

*세무계산 방법 :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 운영표준('14.11.10 개정분)' 참고

*거래단가 : 향후 산림탄소센터에서 공지 예정(1만~1만2천원/tCO₂ 내외)

비거래형

수입산 사용이 가능하며 홍보 등에 활용(거래 불가)



사업 참여자

최종적으로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를 사용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저감한 자

- 주택 · 산업용 펠릿보일러 설치 개인 및 단체 (가정, 학교, 마을, 병원, 사무실, 시설원예단지, 열병합발전소 등)

사업 기간 및 모니터링 주기

사업 기간 : 사업자가 설정

모니터링 주기 : 매년(첫 번째 모니터링 시기는 사업자가 설정 가능)

- 사업자는 모니터링 이후 검 · 인증을 통해 산림탄소흡수량 판매 및 홍보 가능

사업 참여 절차



사업계획서 작성 대행기관

구분	사업계획서 작성 대행기관	전화번호	소재지
1	산림조합중앙회	02-3434-8350	대전
2	(재)한국기후변화 대응연구센터	033-254-2169	춘천
3	(주)태은	031-529-4363	남양주
4	(주)생태서비스컨설팅	02-413-0880	서울
5	고려대학교 환경 GIS-RS 연구실	02-3290-3470	서울

사업계획서 작성 비용의 일부를 지원('15. 2 ~ 12월)

- 사업등록을 완료한 사업자 중 외부 계획서 작성 대행기관에서 컨설팅을 받은 사업자 대상
- 참여유형별 지원금

참여유형	거래형	비거래형
지 원 금	최대 4,000천원/건	최대 3,000천원/건

* 지원금은 매년 초 산림탄소센터 홈페이지에 알림

산림탄소센터 역할



녹색사업단 산림탄소센터

산림탄소상쇄제도 실무 운영기관

탄소흡수원법 제23조에 따라 설치된 기관



사업 등록
신청 접수



신청된 사업
타당성평가



사업등록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접수



검증/인증
신청



산림탄소등록부
관리

- 전화 : 042-603-7315, 7328, 7343
- 홈페이지 : <http://carbon.kgpa.or.kr>

• 이메일 : forestcarbon@kgpa.or.kr